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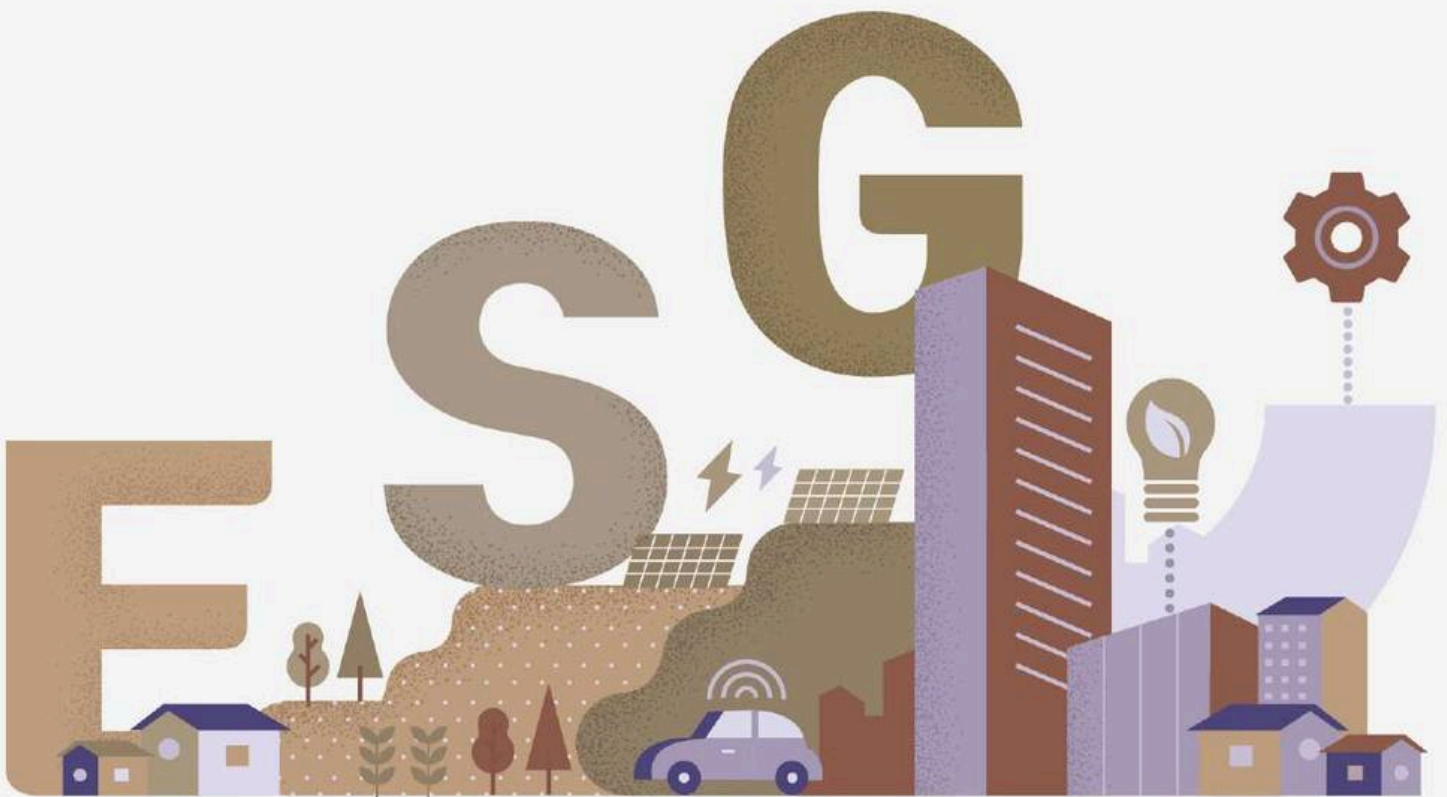
제22대 총선 기획

대전환의 시대 ESG 정책 토론회

2024.3.29(금) 오전 9시 30분

전경련 회관 FKI 타워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

주최·주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제22대 총선 기획

대전환의 시대, ESG 정책 토론회

2024년 3월 29일(금) 오전 9시 30분

전경련 회관 FKI 타워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

<제22대 총선 기획: 대전환의 시대, ESG 정책 토론회>

일시 : 2024년 3월 29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전경련 회관 FKI 타워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
주최·주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시 간	세부 내용	
	[사회자] 최정식 UNI 한국협의회 사무총장	
9:30 ~ 9:55	개 회	[개회사] 김영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장 [축 사] 오준호 새진보연합 상임대표 권한대행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9:55 ~ 10:20	Part 1: 각 정당의 ESG 정책 질의 답변 비교 및 평가	
	발 표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10:20 ~ 11:20	Part 2: ESG 정책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	
	좌 장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
	토 론	권승문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박항주 녹색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기후위기 대응센터장 박태우 진보당 정책국장
11:20~11:40	질의 응답	

개회사

김영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장

개회사

김영호 이사장(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ESG 시대입니다.

ESG는 '지속가능성'이라는 길로 향하는 전환의 문을 열기 위한 키워드로 등장했습니다. ESG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이자 룰 세터(rule setter)인 유럽연합(EU)을 필두로 전 세계가 ESG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법과 제도와 정책을 이미 구축했거나 구축 중이며, 일부 법과 제도는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ESG 정보공개 의무화, 지속가능금융 공시, ESG 공급망 실사법, 녹색분류체계·사회적분류체계 (Green Taxonomy & Social Taxonomy), 재생에너지 촉진 관련 법, ESG 워싱 방지법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규제 흐름과 변화된, 그리고 변화될 비즈니스 환경에서 전 세계의 글로벌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속가능성 제고'를 비전으로 하여 ESG를 내재화하는 동시에 자사의 공급망에도 ESG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후변화, 재생에너지, 인권, 노동 등 ESG 이슈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무역 장벽을 넘어 신무역질서 재편을 위한 강력한 명분이자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ESG가 기업과 금융기관, 더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과 금융기관은 ESG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는 높아졌으나 실행 측면에서는 일부 수출 중심의 글로벌 대기업들을 제외하면 여전히 초보 수준입니다.

ESG 관련 법·제도·정책은 유기적이기 못하고 파편적입니다. ESG 선진국에 비하여 느슨하거나 끊어진 고리가 많습니다. ESG 선순환 생태계의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그때그때 대응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에 ESG 실행을 위한 충분하고도 강력한 동기를 주기에는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는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ESG 기본법 제정'을 필두로, ESG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14개의 법·제도·정책 과제들을 각 정당에 질문했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떤 당은 '규제'보다는 '자율'에, 또 어떤 당은 '자율'보다는 '규제'에 더 중점을 두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각각의 정책질의 문항마다 각 당의 답변은 다를지라도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방향과 목적만큼은 다르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법과 제도와 정책을 고안하거나 구현할 때 꼭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규제가 모두 나쁜 것도 아니고, 자율이 모두 좋은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과제는 강력한 규제로, 또 어떤 과제는 연성법(soft law)으로, 또 어떤 과제는 자율이 좋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입니다. 시장에 충분한 동기와 신호를 주어 작동될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이 국제사회와 비교하여 ESG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입니다. 강력한 규제일 경우, 수용성과 대응성을 높이기 위하여 합당한 지원책과 인센티브 정책도 정교하게 고안해야 합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2007년 탄생 이후부터 CSR과 ESG 관련 법과 정책들을 고안하고 이를 국회와 정부에 지원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언어는 '기업 부담'과 '시기 상조' 그리고 '자율'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입법이 되지 않고 미루어진 정책이 많습니다. 그 사이, 유럽연합 등 다른 나라들은 법과 제도를 만들고 이제 무역장벽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법과 제도를 구축했다면, 우리의 사정은 지금보다는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부담 없는 새로운 법과 정책은 없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는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개척하고 만들어 가야 할 길입니다. 중국의 작가이자 사상가인 루쉰 말대로 길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가고, 두 사람이 가고, 여러 사람이 가면서 비로소 길이 되었습니다. 희망이 그렇습니다.

조만간 탄생할 제22대 국회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대전환의 시대에 지속가능한 길, 그리하여 희망을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전환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은 물론 국가도 회복력이 상실되어 도태될 수 있습니다. 국회, 정부, 기업, 금융기관, 시민사회 등 모든 주체가 기후 위기, 생태위기, 불평등, 빈곤 등 지속가능성 문제 해결에 지식과 경험과 지혜를 모으고, 협력과 연대로 거대한 행동을 만들어 내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주최·주관하는 '제22대 총선 기획: 대전환의 시대, ESG 정책 토론회'가 지속가능한 길을 개척하기 위한, 희망을 만들기 위한 지혜의 토론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ESG를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ESG 관련 법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입법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발표

각 정당의 ESG 정책질의 답변 비교 및 평가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제22대 총선 기획: 대전화의 시대, ESG 정책토론회)

각 당의 ESG 정책 질의 답변 비교 및 평가



2024년 3월 29일

이종오 사무국장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010-4276-6808 | argos68@kosif.org)



ESG 정책 질의서 발송 & 회신 개요

[표] 정책질의서 발송 & 회신 현황

구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개혁신당
정책질의서 발송	●	●	●	●	●	●
회신	●	●	●	●	●	X

- ☞ 발송시점인 2024년 2월 8일 기준 : 그 이후 탄생했거나, 합당 이후 분당한 당은 제외
- <새로운 미래> / <조국혁신당>은 위의 사항에 해당되어 정책질의서에서 제외함

- ☞ 각 질문 항목에 대한 찬반, 명확한 입장 표시와 구체적 제시 요구
- 찬성시 : 추진시점, 추진방식, 추가의견이 있을시 표명
- 반대시 : 반대 이유 명확히 표명. 반대의 경우 대안 제시

- ☞ 모든 질문 항목에 대해 '검토하겠다' 는 표현 사용 금지
- 검토하겠다는 표현은 추진 의지가 없다는 의미로 답변 분류
- 무응답의 경우는 '정책이 없다'는 답변으로 분류

제 22대 총선 : ESG 정책질의 각 정당 답변 비교표

번호	ESG 정책 질의 문항	국 민 의 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 보 당	개신 혁명당
1	ESG 기본법 제정	X	●	●	●	●	미제출
2	ESG 정보공개 (조기) 의무화	▲	●	●	●	●	
3	한국판 공급망 실사법 제정	X	●	●	●	●	
4	지속가능 공공조달 의무화(조달사업법 개정)	X	▲	●	●	●	
5	한국판 지속가능금융 액션 플랜 및 로드맵 수립	●	●	●	●	●	
6	한국판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제 마련	▲	●	●	●	●	
7	모든 공적연기금의 ESG 고려 의무화 및 주주권 확대(국가재정법 개정)	X	●	●	●	●	
8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평가에 기후리스크 고려 의무	▲	●	●	●	●	
9	공적연기금 및 공적금융기관의 자산 포트폴리오 넷제로 선언 및 로드맵 수립과 이행	X	●	●	●	●	
10	ESG 금융공사 설립	X	●	X	X	●	
11	스튜어드십 코드 모니터링 기구 설치	▲	●	●	●	●	
12	ESG 워싱 방지 모니터링 기구 설치	X	●	●	●	●	
13	기업재생에너지 수요 반영한 전력망 탈탄소화 목표수립 및 재생에너지 공급확대에 대한 입장	X	●	●	●	X	
14	기업 재생에너지 구매 환경 개선 정책에 대한 입장	기업재생에너지 조달 인센티브 정책 강화	미표시 찬성	●	●	○	X
		기업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 도입	미표시 찬성	●	●	●	X
		중소·중견 재생에너지 구매지원	미표시 찬성	●	●	○	●
		기업재생에너지 관련 정보 투명성 제고	미표시 찬성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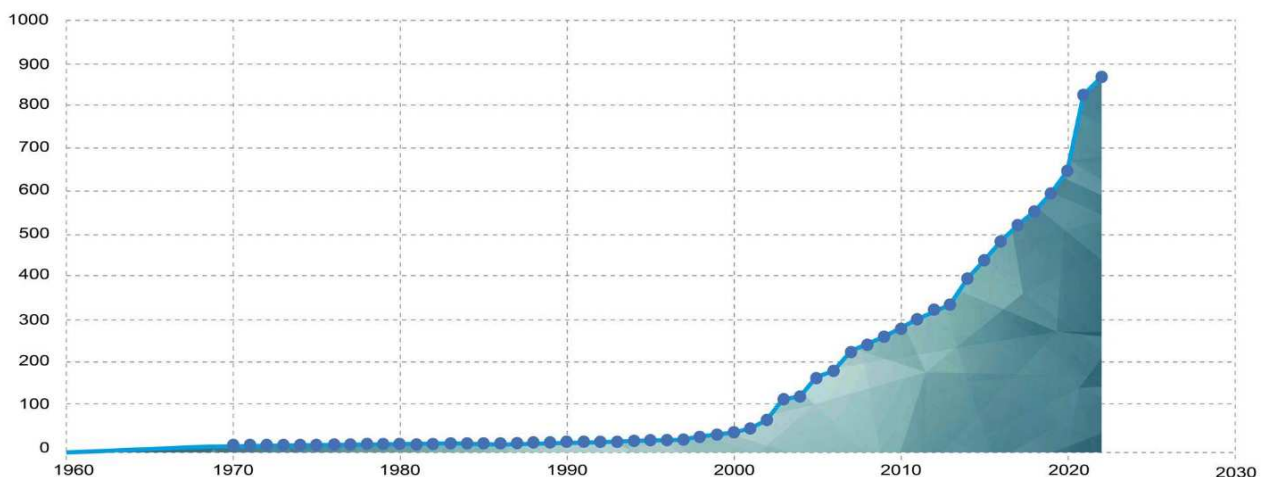
※ 표시 구분: ●(찬성) / X(반대) / ○(한시적 찬성) / ▲(찬반 명확하지 않은 의견 개진 = 결과적으로는 반대의 취지로 읽힘) / 미표시 찬성(각 항목에 찬반을 표시하지 않았으나, 상위 질문에 찬성으로 표시한 경우)

ESG 시장 선순환 생태계 구축 : 글로벌 ESG 규제 정책 추이

■ ESG의 시대

- 1960년부터 2022년까지 ESG 관련 규제들의 채택이 가속화
- 투자자들이 ESG 요소를 포함한 모든 장기적인 가치 동인을 고려하도록 지원, 권장 또는 요구하는 868개의 정책 도구 및 지침과 300개 이상의 정책 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96%는 2000년 이후에 개발됨

[표] ESG(지속가능금융) 관련 누적 정책 개입 건수



출처 : PRI, Regulation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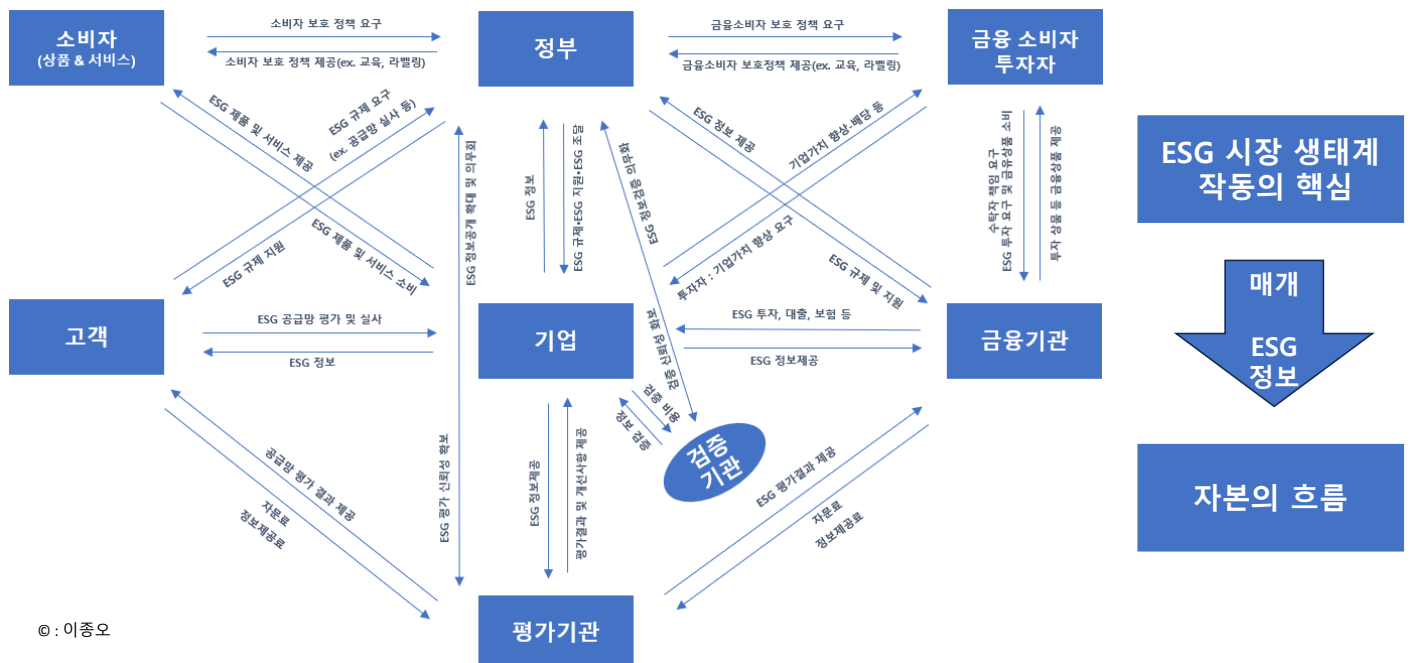
ESG 시장 선순환 생태계 구축 : 글로벌 ESG 규제 유형

[표] PRI 규제 데이터베이스 상 규제유형과 적용대상

규제유형	설명	적용대상
기업 ESG 정보공개	주요 ESG 사안에 대한 기업의 전략, 운영, 성과와 관련한 현재와 미래 데이터와 분석을 반복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발행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정책 수단	• 비기업 연기금 • 기업 연기금 • 보험사 • 기타 자산 소유자 • 투자 운용사 •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 • 기업 • 신용평가기관 • 기타(거래소 등)
투자자 ESG 정보공개	투자자가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공개 할 때 ESG 이슈를 포함하도록 권장/요구하는 정책 수단	
투자자 ESG 통합	투자자가 그들의 투자 의사결정에 ESG 이슈를 포함하도록 권장/요구하는 정책 수단	
스튜어드십 코드	기업 관여와 의결권 행사의 모범 관행 원칙. 일부 스튜어드십 코드에는 투자 의사결정시 ESG 이슈를 고려하는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분류체계	투자자가 경제활동이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지를 이해시키고, 저탄소·포용경제로의 전환을 이끄는 데 도움을 주는 분류 시스템	
부문별 특정 정책	배출권거래, 오염세, 목재 거래법과 같이 부문별로 초점을 둔 실물경제 정책 수단	
금융상품	지속가능성과 연계된 라벨이나 채권 등을 도입하는 정책 수단	
국가 지속가능금융 전략	금융 부문 전체가 경제와 금융을 파리협정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맞춤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목표를 지원하도록 보장하는 광범위한 국가 정책 프레임워크 및 실행계획/전략	
기타 규제	책임투자과 관련한 기타 규제(예 : 넷제로 서약, 국제인권 가이드라인)	

출처 : PRI 규제 방법론 문서를 토대로 이종오 작성

ESG 선순환 생태계



정책질의 ① ESG 기본법 제정

■ ESG 기본법

- 2016년 총선 때 <사회적 책임 기본법> 제정 요구가 시초가 되어 <ESG 기본법>으로 발의
- 이원욱 의원안 / 조해진 의원안으로 2건이 발의되어 있음
- ESG 기본법에는 **정부의 역할(기본계획+시행계획, 금융정책, 공공조달 등), 공시(의무+자발), 지원 정책, 공적금융기관의 자금공급과 연금금 투자, ESG 워싱 방지 등** 규정되어 있음

구분	주요 내용
총칙 (제1장)	• 목적 : 이 법은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촉진하여 기업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정의 : 환경·사회·지배구조,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공시, 검증기관, 평가기관 등 • 책무 :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및 투자 촉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 금융기관의 책무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 기본계획 등 (제2장)	• 기본계획 수립 : 정부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포함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 시행계획 수립 : 정부는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 •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위원회 :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위원회를 둠 •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 기획재정부장관은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과 관련된 법령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개진 또는 권고할 수 있음

정책질의 ① ESG 기본법 제정

구분	주요 내용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등의 업무 (제3장)	• 금융감독 정책 : 정부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금융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감독정책을 마련·시행 • 공공금융기관 등의 자금공급 :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은행 및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은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선도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거나 보증할 수 있음 • 연금기금의 우선적 투자 :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등은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적극적인 기업에 우선적 투자를 할 수 있음
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공시 (제4장)	•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의무 공시기업 : 공시대상기업은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공시하여야 함 • 자발적 공시기업 : 정부는 의무공시기업이 아닌 기업이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자발적으로 공시하려고 선언할 수 있는 기반과 환경을 조성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음
검증기관의 등록 (제5장)	•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공시 검증기관 등록 :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공시 검증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 • 검증기준 및 품질관리기준 : 검증기관은 공정·타당한 공시검증기준에 따라 검증을 실시하며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업무의 품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평가기관의 평가지표 공개 : 평가기관은 공시기업이 수행한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공시를 평가하고 이를 공개해야 함

정책질의 ① ESG 기본법 제정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참여 기업 지원 (제 6장)	• 자발적 공시기업 등에 대한 지원 : 자발적 공시 선언기업 등에 대해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 • 자발적 공시기업 등에 대한 자금조달 : 기획재정부장관은 자발적 공시기업이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새마을금고, 신용보증재단 등에 자금우대에 관한 지원 계획을 수립·운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을 위한 조달 : 조달청장은 조달절차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반영할 수 있고 자발적 공시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 공공기관의 장은 자발적 공시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 • 수계약의 반영 : 수계약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할 수 있고 자발적 공시기업 우대 • 조세 감면 : 자발적 공시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가능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 (안 제7장)	•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 정부는 공급망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와 관련된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할 수 있음 •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을 위한 소비문화 확산 : 정부는 기업경영에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가 소비문화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 정부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을 위하여 우수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기업 선정 •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센터의 지정 : 정부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영촉진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

정책질의 ① ESG 기본법 제정

보칙 (제8장)	• 자료제출 및 검사 : 정부는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증기관, 평가기관, 센터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음 • 위장 환경·사회·지배구조 조사 및 공표 :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위장한 경우 등에 대해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
벌칙 (제9장)	• 벌칙 : 검증보고서 거짓 작성 등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밀 누설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 • 과태료 :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검증기관 및 검증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검증기관에 대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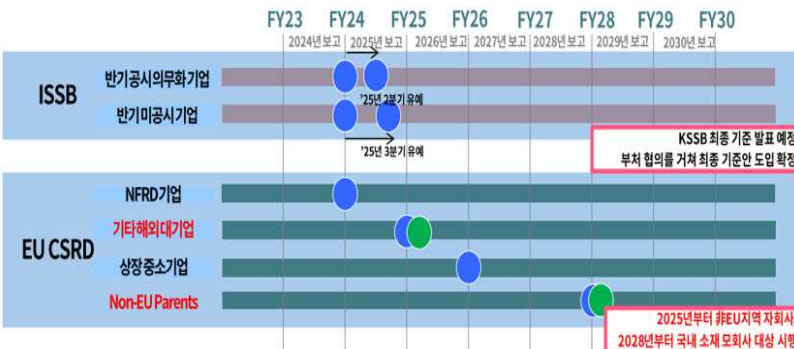
① ESG 기본법 제정 : 각 당 답변 비교

구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찬성(●) / 반대(X) / 모호(▲)	X	●	●	●	●
추가 의견		산업, 환경, 정부, 노동 등 다분야에 걸쳐 있어 정부 부처 및 상임위가 속의 필요	녹색산업전환, 탄소국경 조정제도 등과 연계한 입법화 필요(윤석열 정부하에서 가능한지 의문)	탄소중립 위해서는 ESG 기본법과 더불어 탄소세-탄소배당을 통한 주요 산업의 녹색전환 유도 필요	- ESG 평가기준 대한 공적 기준 마련 필요 - ESG의 환경과 사회 문제는 노동조합,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 반영 검토 - ESG 평가기준의 자의성으로 인한 그린워싱 경계 필요
추진 시점		22대 국회 임기 내	'24~'26년	개원 즉시 ESG 기본법을 비롯한 제반 탄소중립 법안 마련 목표	22대 국회 상반기
추진 방식		법안 발의	입법화(예 : ESG 포럼 운영 1년간 진행)를 고려하면 1년 이상 소요 추정됨		일부 법안 보장 및 동의하는 정당 연합정치로 공동입법 발의
반대 이유	- ESG 경영 의무화는 규제라 작용할 우려 - ESG 경영 촉진 위한 단일법을 제정한 해외 사례 없음				
대안	ESG 경영은 정부가 법률로 의무화하기보다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에 중점 필요				

정책질의 ② ESG 정보공개 (조기) 의무화

■ ESG 공시 적용

- ISSB : 각국 도입 시점부터 공시 의무 시작
- EU : EU가 제시한 공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EU내 자회사를 보유한 비EU대기업 대상은 FY25부터 시행 (PWC에 따르면 국내 100대 기업 30%가 자회사 EU 소재)
- 미국 : SEC 기후공시 의무화 법(2024년 3월 6일 통과)
 - 의무 적용 대상 : 상장 대기업(시가총액 7억 달러 이상) / 상장 중기업(7500만 달러 이상 2억5000만 달러 미만) ** 소규모 기업은 제외
 - 2026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의무
 - 상장 대기업(시가총액 7억 달러 이상)



「국내 ESG 공시기준 현장 간담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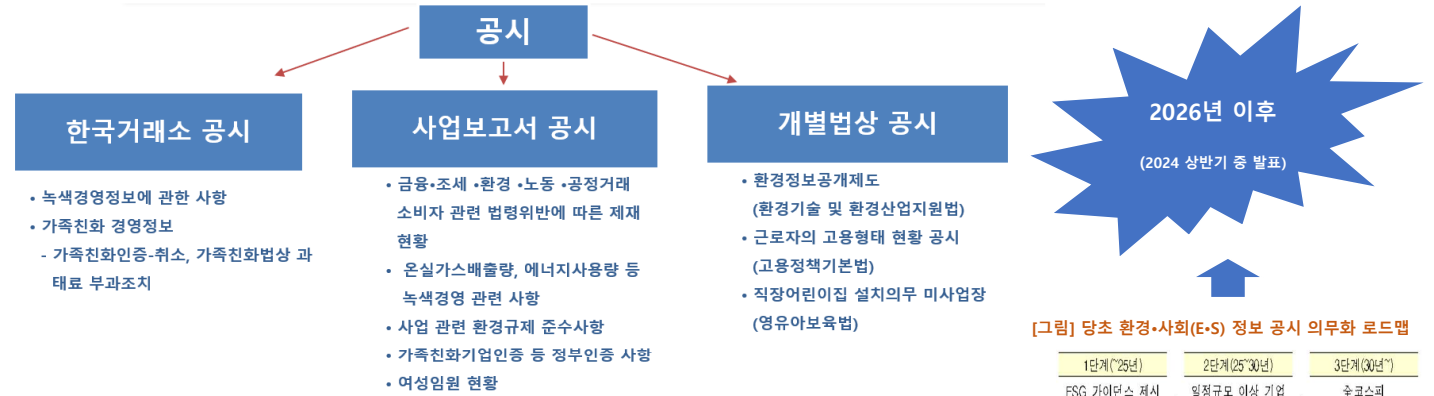
- 국내 ESG 공시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 ✓ 글로벌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국내 ESG 공시기준을 제정하여 기업의 이중공시 부담 완화
 - ✓ 국내 산업구조와 기업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기업 부담 최소화
 - ✓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업 역량을 높이는 지원도 추진
- 그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24.3~4월 중 발표하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

□ 금융위는 국내 공시시점은 2026년 이후라고 발표

- 당초에는 자산규모 2조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2025년(회계연도 2024년)부터 시작하여 2030년에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적용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 국내 기업의 공시시점을 2026년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글로벌 공시 시간표에 비해 매우 느림
- 국내 기업의 ESG 경쟁력 저하 우려
- 공시기준은 2024년 4월 초순 이후 발표 예정
- 공시기준 발표도 중요하지만 공시 적용시점 발표가 더욱 중요
- 기업 대응 측면

정책질의 ② ESG 정보공개 (조기) 의무화



[그림] 당초 환경·사회(E-S) 정보 공시 의무화 로드맵

1단계('25년)	2단계(25~'30년)	3단계(30년~)
ESG 가이드선 제시 자율공시 활성화	일정규모 이상 기업 의무공시	소규모 상장사 의무공시

[표] 국내 ESG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한 역대 국회 <사업보고서 개정안> 발의 현황

구분	18대 (2008~2012)	19대 (2012~2016)	20대 (2016~2020)	21대 (2020~2024)	합계
다양한 ESG 중 단 1개 사안이라도 발의	1건 (이정희 의원)	5건	9건	2건	17건
ESG 이슈 전반 포함 발의	1건 (박선숙 의원) (2010.7.1)	2건 (홍일표·이연주 의원)	3건 (홍일표·이연주·*유동수 의원)	3건 (민형배·유의동·이용우 의원)	9건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화 단계별 확대방안 >

적용시기	'19년(제1회)	'22년	'24년	'26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1조원 이상	5천억원 이상	소코스피상장사

* 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 법안은 '19년 200개사 → '20년 211개사

- 개정안의 다수는 임원보수한도에 관한 사안. 2009년 3월 이정희 의원의 임원별 보수공시 의무화를 시작으로 그동안 공시확대라는 성과를 이루어 냄
- ESG 이슈 전반에 대한 공시의무화는 13년 동안 무산

Source : 국회 의원정보서비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 20대 국회의 ESG 전반 사항 개정안 3건 중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1건은 지속가능성보고서 발행의무화 법안임

② ESG 정보공개 조기 의무화 : 각 당 답변 비교

구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찬성(●) / 반대(X) / 모호(▲)	▲	●	●	●	●
추가 의견		•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Say on Climate 제도 활성화 등 실질적으로 ESG 경영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 도입 노력 병행	• 2030년 전체 코스피 상장사 의무적용 시점을 2030년에서 1년~2년 단축(점진적 확대방안 마련)		
추진 시점		• 22대 국회 임기 내	• '24~'26년	• 22대 국회 상반기 추진 예정	• 22대 국회 상반기
추진 방식		• 자본시장법,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등	• ESG 기본법 포럼 운영(1년)을 통해 조정 - 자본시장법 개정 등도 함께 검토	• 자본시장법 개정 대표발의 또는 발의에 동의 방식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 바탕)	• 자본시장법 개정
반대 이유					
대안	• 2024년 상반기 발표 예정인 ESG 공시기준을 토대로 공시 추진시기, 대상기업, 추진방법 등을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의견 수렴 결정 필요 • EU, 북미 등 무역상대국 동향 주시하면서 국내 산업계의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면밀한 지원 방안 마련 후 제도 시행 필요				

정책질의 ③ 한국판 공급망 실사법 제정

실사 의무화

기업의 공급망 내 인권, 환경
보호 강화목적으로 공급망에
대한 실사 추진

- EU : 지속가능한 기업실사지침
- 프랑스 : 기업 실사 의무법
- 독일 : 기업 공급망 실사법
- 영국 : 현대판 노예방지법
- 네덜란드 : 아동노동 실사의무
- 미국 :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성법

[그림] EU의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적용 대상

적용연도(발효 후)	기업 규모
3년	직원 수 5000명 이상, 매출액 15억 유로(약 2조 원) 이상 기업
4년	직원수 3000명 이상, 매출액 9억 유로(약 1조 3084억 원) 이상 기업
5년	직원수 1000명, 매출액 4억5000만 유로(약 6542억 원) 이상 기업

정책질의 ③ 한국판 공급망 실사법 제정

정태호 의원안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구 분	주요내용
총칙 (안 제1장)	- 목적: 인권환경실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는 기업활동을 장려·지원하고 기업에 의한 인권 또는 환경 침해를 예방하여 기업이 자신의 활동과 글로벌 공급망에서 인권과 환경 존중 <i>cordad</i> 다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 정의: 기업, 기업활동, 인권환경위험, 인권환경실사, 공급망, 이해관계자 등에 대해 정의 - 의무: 기업에 의한 인권 또는 환경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의 의무 규정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권환경실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을 따르고 다른 법률 제·개정할 경우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함. - 적용범위: 중소기업 및 상시 5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000억원 미만인 기업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음.
인권환경실사 이행체계 (안 제2장)	- 인권환경실사 이행체계의 구축 및 운영: 기업은 인권환경실사 이행정책, 이행책임자의 지정 등 이행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 이사회 보고 및 승인: 경영책임자는 매년 인권환경실사 이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에 보고, 승인을 받아야 함. - 경영책임자 등의 주의의무: 경영책임자 등은 인권환경실사에 대한 감독책임을 부담하고 고의 과실로 감독책임을 게을리하여 기업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경영책임자는 기업과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 - 고충처리절차의 운영: 기업은 공급망에 속한 기업의 활동에 현존하거나 잠재하는 인권환경위험을 신고할 수 있는 고충처리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함.

구 분	주요내용
인권환경실사 (제3장)	- 인권환경위험의 식별: 기업은 최소 연 1회 공급망에 속한 기업의 활동에 현존하거나 잠재하는 인권환경위험을 확인하여야 함. - 인권환경위험 대책의 수립·실행: 기업이 인권환경위험을 식별한 경우 해당 기업은 지체 없이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함. - 인권환경위험 대책의 평가 및 환류: 기업은 인권환경위험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이를 평가함. - 인권환경실사보고서: 기업은 인권환경위험의 식별 결과, 인권환경위험 대책의 평가 결과 등을 포함하는 인권환경실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개하여야 함. - 이해관계자의 정보청구권: 이해관계자는 인권환경위험 대책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열람을 청구할 수 있음.
인권환경기업위원회 (제4장)	- (제1절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인권환경기업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업의 인권환경실사에 대한 이의제기 조사 및 식별, 국제 협력, 기업의 인권환경실사 지원 등을 수행하는 인권환경기업위원회 설치 - 인권환경기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 장관,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재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함. 위원회의 업무처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둘. - (제2절 분쟁의 해결 등) - 이의제기 및 조사: 이해관계인은 기업의 인권환경실사에 대해 위원회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시정요구 및 시정명령: 위원회는 기업이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시정명령 이진 시정권고를 내릴 수 있음. - 입찰 참가자격 제한: 위원회는 확정된 시정명령의 해당 기업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제3절 분쟁·고위험 지역) - 분쟁·고위험지역의 지정 및 해제: 위원회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일부 지역을 분쟁·고위험지역으로 지정하여 공고할 수 있으며 위험이 해소된 경우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 - (제4절 인권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 - 인권환경침해자지원기금의 설치: 기업이 인권환경실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인권 또는 환경침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권침해피해자지원기금을 설치함. 그 재원은 정부 출연

구 분	주요내용
금, 과태료 수납액,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함.	
- 기금의 용도 및 관리·운영: 기금은 인권 또는 환경침해의 예방·구제, 피해자 지원, 피해자의 권익 증진과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조사·교육·홍보 등에 사용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운영주체가 됨.	
- 손해배상: 기업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함.	
- 인적관계 등의 추정: 피해자가 기업 자신의 활동 또는 공급망에 속한 기업의 활동이 손해와 관련되어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한 경우 기업에 이 법을 위반하였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 다만, 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거나 이 법을 준수하였더라도 손해의 발생을 막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경우 기업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함	
- 소송비용의 부담의 특례: 법원은 소송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재판을 할 수 있음.	
- 벌칙: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권환경위험을 식별하지 아니하거나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과태료: 이사회에 기업의 인권환경실사 이행에 관한 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인권환경위험을 식별하지 아니한 자, 인권환경위험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인권환경실사보고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자,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③ 한국판 공급망 실사법 제정 : 각 당 답변 비교

구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찬성(●) / 반대(X) / 모호(▲)	X	●	●	●	●
추가 의견		• 단계적 접근과 확대 필요 • 부처간 이행방안 논의 필요 • EU 진행상황 및 보완사항 모니터링 필요			• 위반시 시정권고나 시정 명령에 그치는 기존 제출 법안에서 보다 책임 요건 강화
추진 시점		• 22대 국회 임기 내	• '24 ~ '26년	• 22대 국회 상반기 중	• 22대 국회 상반기
추진 방식		• 관련 법안 추진	• ESG 기본법 포럼 운영(1년 간) 통해서 조정 • 입법화 전 산자부의 '공급망 K-ESG 가이드라인(22.12) 이 용실태와 효과성 평가하여 입법과제 도출	• 전문가들과 관련 단체 의견 청취 통해 직접발의 또는 타 의원 발의에 동참	• 21대 국회 기발의 정태호 의원안 기초로 보다 강화된 한국판 ESG 공급망 실사법 제정
반대 이유	• EU 법안 제정 여부 미확정. 국내에서 먼저 추진할 경우 기업 부담 • 유럽 등 주변국들의 법안 제정 시점 고려해 추가 논의 검토 필요 • 국내기업의 복잡한 원-하청 관계, 중국-인도-동남아 등 개도국에 제조업 공급망 배치 등 기업구조 감안시 공급망 전체에 대한 실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상호 직접 관련성이 적은 인권과 환경을 단일법으로 규율할 필요성-타당성이 낮고 기존 법체계와 충돌 우려				
대안					

정책질의 ④ 지속가능 공공조달 의무화(조달사업법 개정)

■ 지속가능 공공조달 당위성과 영향력

- 지속가능 공공조달(Socially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재화와 서비스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반부패, 환경, 고용, 노동, 사회통합 등 구매활동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는 방식임
-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공공조달 과정에서 ESG 등을 고려함으로써 **투자자의 시장감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중소기업의 ESG 역향을 강화할 수 있음**
-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EU나 해외의 공공조달시장에의 신규 진입 및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

[표] 제21대 국회 조달사업법 개정안 발의(이용선 의원안)

구분	주요내용	비고
안 제1조	○ 조달사업의 목적 - 공공의 이익, 지속가능한 조달 추가	• 현행 조달사업의 목적에는 공공성, 효율성 규정
안 제5조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 - 조달기업의 환경적·사회적 가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추가	• 현재는 공공조달 관련 정책 및 제도마련, 공공조달 관련 성과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안 제6조	○ 사회적 책임 장려 조달 - 조달절차에서 환경적·사회적 가치 반영 의무화	• 현재는 사회적·환경적 가치 반영 임의규정
안 제10조	○ 자료제공의 요청 등 - 조달청장은 조달기업에게 환경적·사회적 가치 이행 여부 및 향후 계획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 현재 자료제공의 요청대상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한정
안 제26조	○ 우수조달물품 지정 - 우수조달물품 지정 대상에 환경적·사회적 가치 우수 기업 추가	• 현재는 우수조달물품 지정 대상은 중소기업, 초기 중견기업

④ 지속가능공공조달 의무화(조달사업법 개정) : 각 당 답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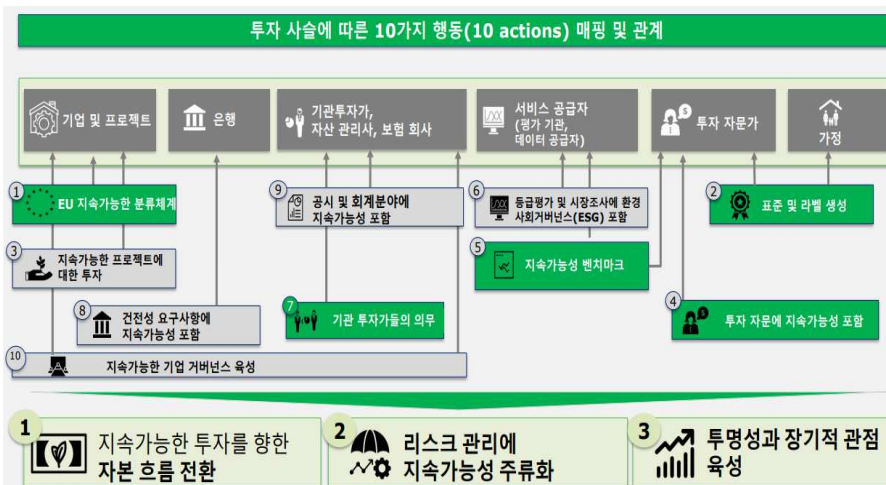
구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찬성(●) / 반대(X) / 모호(▲)	X	▲	●	●	●
추가 의견					• 반ESG 사건이나 반 기후 사건 연루기업 등에 조달 참여 자격 미부여 고려
추진 시점			• 2025년	• 22대 국회 개원 직후	• 22대 국회 상반기
추진 방식			• 이낙연 의원의 ESG 4법(공운법·국가재정법·국민연금법·조달사업법) 중합 • 조달청 공공조달 ESG 시범 도입을 위한 기본지침(22.5) 운영실태 파악	• 조달사업법 개정 • 향후 직접 발의 또는 타 의원 발의에 동참	• 조달사업법 개정안에 기초해 추진
반대 이유	• 중소기업에 대한 ESG 지원 방안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조달 요구사항에 ESG 고려는 기업의 부담 가중. 특히 고탄소배출 산업이 비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어 지역경제 불균형을 심화 • 대기업 또는 특정 기업 혜택이 집중되는 부작용 초래 • 중소기업 ESG 경영 미흡. 변별력도 없을 것으로 우려 • 중소기업 ESG 경영 일정 수준에 올랐을 때 도입 필요				
대안					
찬반을 명확히 표현하지 않은 답변의 경우 (의견)으로 분류		• 조달사업에 직접 적용을 위해서는 ESG 평가체계와 인증제도가 수립되어야 가능			

정책질의 ⑤ 한국판 지속가능금융 액션 플랜 및 로드맵 수립

■ EU 지속가능금융 액션 플랜

- EU는 지속가능금융 촉진을 위하여 법·제도 패키지 성격의 포괄적 액션플랜을 2018년에 수립함
- 3대 목표, 10대 실행과제로 구성 • 2021년 7월에는 그린딜 등을 반영한 지속가능금융 전략 발표

[표] EU 지속가능금융 액션플랜



출처 : European Commission, Action Plan

○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자본흐름 유도

- 1) 지속가능한 활동에 대한 EU차원의 분류표준 시스템 개발
- 2) 지속가능 또는 녹색금융 상품 표준 및 라벨링 개발
- 3)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유도 및 확대
- 4) 금융관련 자본 제공 시, 지속가능성 이슈 반영
- 5) 지속가능성 관련 벤치마크 개발

○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를 리스크 관리의 핵심에 반영

- 6) 시장조사분석 및 신용평가에 지속가능성 반영
- 7)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와 자산운용사의 수탁자 책무 명확화
- 8) 연기금, 은행, 보험사의 신중의무(prudential requirement)에 지속가능성 반영

○ 금융의 투명성 및 장기주의 확산

- 9) 지속가능성 이슈 공시 강화 및 회계표준 반영
- 10) 기업 지배구조의 지속가능성 향상 및 자본시장의 단기주의 압력 완화

정책질의 ⑤ 한국판 지속가능금융 액션 플랜 및 로드맵 수립

[그림] 문재인 정부 <녹색금융 활성화 전략>(2021.1.25)



[그림] 윤석열 정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2024.3.19)



⑤ K-지속가능금융 액션플랜 및 로드맵 수립 : 각 당 답변 비교

구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찬성(●) / 반대(X) / 모호(▲)	●	●	●	●	●
추가 의견					
추진 시점	• 22대 국회 기후특위 설치 이후	• 22대 국회 임기내	• '25~'26년	• 22대 국회 상반기	• 22대 국회 상반기
추진 방식	- 녹색금융 로드맵 마련 - 녹색채권 활성화→녹색 여신시장 확대→녹색체계 기반 주식·파생시장 확대(녹색분류체계 기반 공시 도입) - 연구용역 바탕으로 합의를 위한 포럼 등을 통해 공론화 - 현 정부의 기존인 '밸류업' 프로그램과 연계 통한 국내 금융기관의 글로벌화, 선진화에 초점	지속가능금융 액션 플랜 수립을 위한 모범 기준 마련	탄소중립기본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사회적책임 투자 채권(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소가능채권) 등에 대한 실행 성과와 한계를 분석해 플랜을 수립	-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향후 법제화를 위한 방안 모색 - 전 정부안을 참고하여 공론화 및 추진으로 정부의 금융정책 변화를 위해 노력	연구용역 통한 종합정책 및 법안 마련
반대 이유					
대안					

정책질의 ⑥ 한국판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제 마련

[그림] EU의 지속가능금융 공시 규제(SFDR) 체계와 공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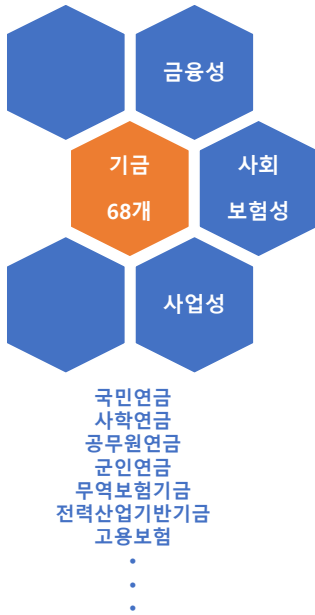


⑥ 한국판 지속가능금융 공시 규제 마련 : 각 당 답변 비교

구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찬성(●) / 반대(X) / 모호(▲)	▲	●	●	●	●
추가 의견		금융기관의 투자·금융상품 등에 대한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			
추진 시점		22대 국회 임기 내	'25 ~ '26년	22대 국회 상반기	22대 국회 상반기
추진 방식		자본시장법 개정, 지속가능금융 공시기준·가이드 라인 마련 등	금감원이 2024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ESG 펀드공시 기준' 적용을 분석하여, 규제안 작성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향후 법제화를 위한 방안 모색	금융기관을 포함한 기업의 기후 리스크 공시 제도를 확립하고 시행
반대 이유					
대안					
찬반을 명확히 표현하지 않은 답변의 경우 (의견)으로 분류	ESG 펀드공시 기준이 시행 초기인만큼 공시기준의 시행성과, 펀드시장 규모,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한 후 공시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정책질의 ⑦ : 모든 공적연기금의 ESG 고려 의무화 및 주주권 확대

[그림]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의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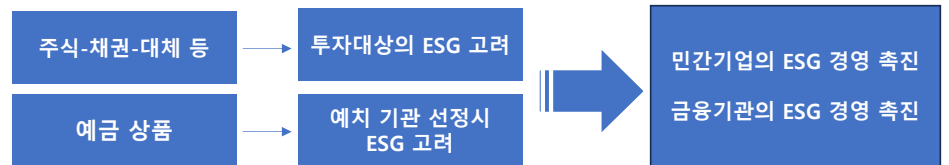


[표]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운용 규모 추이

단위 : 조 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기금운용규모	633.2	724.8	773.7	756.3	893.1	1,023.3
사업비	129.3	148.9	169.8	181.1	180.6	199.2
기금운영비	2.5	2.6	2.6	2.7	2.7	2.7
여유자금운용	230.2	238.4	229.5	225.4	280.0	313.5
정부내부지출 등	271.2	334.9	371.8	347.1	424.9	507.9

출처 : e-나라지표



정책질의 ⑦ : 모든 공적연기금의 ESG 고려 의무화 및 주주권 확대

[표] 국가재정법 개정의 예

구분	현행	개정
기금자산운용의 원칙 (제63조)	○ 안정성·유동성·수익성·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 안정성·유동성·수익성·공공성· 독립성·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 (신설)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 및 예치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하여야 하고(혹은 고려할 수 있고)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공시하여야 함
자산운용지침 제정목적 (제79조제1항)	○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지침 제정	○ 기금의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투자자로서 제반 권리와 책임이 성실하게 행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지침 제정 ☞ 기금관리주체의 성실한 주주권 행사 의무 명시
자산운용지침 포함사항 (제79조제3항)	○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 보유주식의 주주권 행사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 (신설) 투자대상 및 예치기관에 대하여 고려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 및 절차
기금운용의 평가 (제82조)		○ (신설) (제82조제2항)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금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하는 경우 기금관리·운용의 원칙, 기금자산운용의 원칙, 주주권 행사 원칙, 자산운용지침 준수 여부 평가
의결권 행사의 원칙 (제64조)	○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기금의 이익을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고, 그 행사내용을 공시하여야 함	○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권 을 기금의 이익을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고, 그 행사내용을 공개하여야 함

출처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⑦ 모든 공적연기금의 ESG 고려 의무화 및 주주권 확대 : 각 당 답변 비교

구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찬성(●) / 반대(X) / 모호(▲)	X	●	●	●	●
추가 의견		• 환경적 기반과 연기금 자체 준비 강화해 ESG 수준 적극 제고 필요			• 국가재정법 개정과 함께 금융배출량 공시대상으로 규정
추진 시점		• 추진 시점 미적시	• '25~ '26년	• 22대 국회 상반기	• 22대 국회 상반기
추진 방식		• 기업 ESG 공시 의무화 등 환경 조성, 국민연금 ESG 평가지표 마련 등 실행체계 구축 조속 추진 필요	• 이낙연 의원의 'ESG 4법' 개정안 내용 검토 추진	• 관련법 개정 등을 위한 전문가, 제 정당과의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22대 국회 통과 노력	• 국가재정법 개정
반대 이유	• 연기금 자산운용 방향은 해당 연기금의 여유자산, 자산 시장 동향, 정책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할 사항 - ESG 투자를 법으로 의무 규정할 경우 자산운용 제약 우려 - 기금평가지침의 평가항목 법규정 신설은 탄력적인 지침개정에 지장 우려 - 현재도 자산운용평가시 ESG투자노력을 평가항목으로 규정함				
대안					

□ 모든 공적 연기금의 ESG 고려의무화 및 주주권 확대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수위

- 1) ESG 고려와 공시수준 : ESG 고려 의무 + 관련 공시 의무
- 2) 자산운용지침상 ESG 고려와 공시 등 제반사항 포함
- 3) 연기금평가지침에 ESG 평가지표 반영
- 4) 의결권을 주주권으로 개정

• 녹색정의당-새진보연합-진보당 : 좌측의 모든 사항에 대해 찬성

• 더불어민주당 : 좌측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찬성 표기는 하지 않았지만, 내용상 국가재정법 개정에는 찬성 표함

정책질의 ⑧ :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평가에 기후리스크 고려 의무

○ 권고안 1.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금융안정성 모니터링 및 세부 금융감독에 반영 ("Integrating climate-related risks into financial stability monitoring and micro-supervision")

- 금융시스템의 기후 관련 재무적 리스크 평가

- 물리적 리스크 및 전환 리스크 채널을 mapping 후, 금융제도의 위험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주요 지표들 채택
- 세계 각국의 미래 상황을 포괄하는 데이터 기반 시나리오 (data-based scenario)를 기반으로 금융 시스템 전반에 걸친 기후리스크 분석
- 기후변화의 물리적 및 전환 영향이 거시경제 예측 및 재정적 안정성 모니터링에 어떻게 포함될 수 있는지 고려

- 기후 관련 리스크를 아래 사항을 포함하는 건전성 감독에 반영

- 금융회사에서 기후 관련 위험이 이사회 단위에서 이해되고 논의되며, 리스크 관리 및 투자결정에서 고려되고, 회사 전략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여
- 금융회사가 기후 관련 재무위험에 대한 식별, 분석, 관리 및 공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여
- 향후 금융회사에게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감독 지침 수립

○ 권고안 2. 지속가능성 요소를 포트폴리오 관리에 반영 ("Integrating sustainability factors into own-portfolio management")

- 중앙은행의 포트폴리오 운영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며 중앙은행의 자금, 연기금 및 준비금에 지속가능성 요소를 반영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을 권장함
- 자기 포트폴리오 관리를 넘어 통화정책에도 기후 리스크를 포함한 ESG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함

○ 권고안 3. 정보격차 좁히기 ("Bridging the data gaps")

- 공공기관은 기후리스크 평가(Climate Risk Assessment)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야 하며 가급적이면 오픈소스로 제공할 것을 권장
- 현존하는 데이터 격차 해소를 위해 이해당사자간의 공동워크그룹 결성 권장

○ 권고안 4. 인식과 지적역량 구축 및 기술지원과 지식공유 장려 ("Building awareness and intellectual capacity and encouraging technical assistance and knowledge sharing")

- NGFS는 중앙은행, 감독기관 및 금융기관이 자신의 이해관계자에게 기후변화 리스크 및 기회를 설명할 수 있는 자체역량을 향상시키기를 권장
- 개발도상국의 인식과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기술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장

○ 권고안 5. 체계적이고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후와 환경 관련 정보공시체계 구축 ("Achieving robust and internationally consistent climate and environment-related disclosure")

- NGFS 구성원들은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대한 지지를 공동으로 이행하며 공공기관 및 공공채권의 정보를 TCFD 권고안에 따라 공개할 것 권장

○ 권고안 6. (녹색) 경제활동 분류체계 지원("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a taxonomy of economic activities")

- 정책입안자는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들로 하여금 (녹색경제) 분류법을 개발해 경제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하는 경제활동과 기후환경리스크에 노출된 경제활동의 분류 권장
- 분류법은 금융기관의 기후환경리스크 평가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자산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이해를 돕고 파리기후협정에 부합하는 저탄소경제 투자를 위한 자본동원을 지원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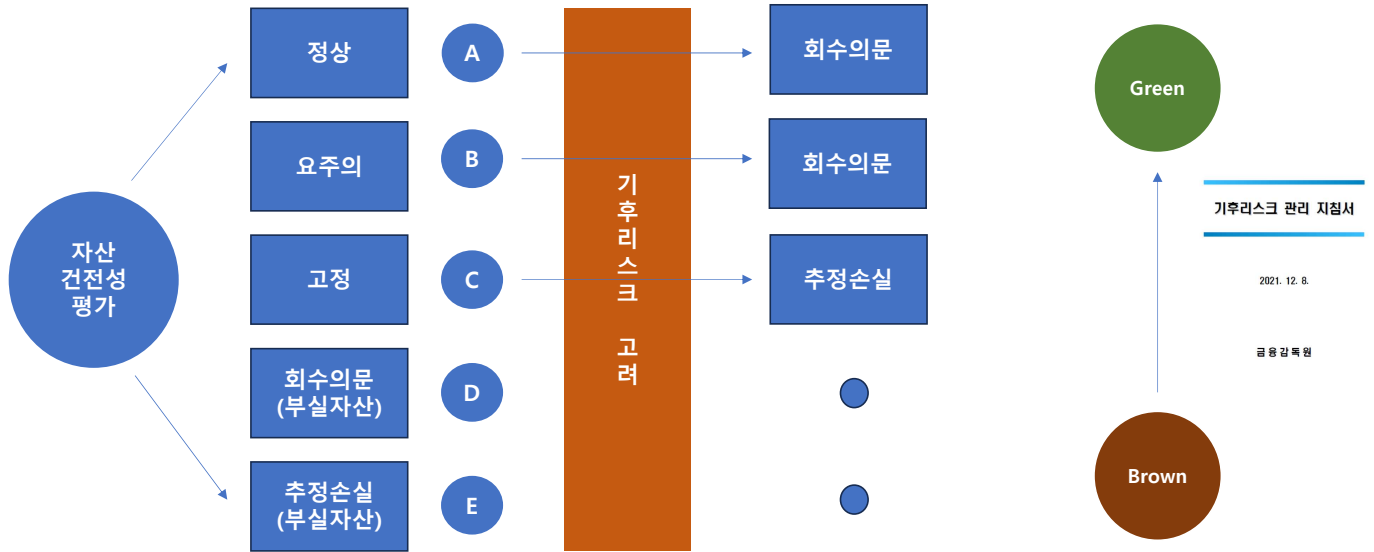
■ NGFS(녹색금융 네트워크)
Network of Central Banks and Supervisors for Greening Financial System

- 녹색금융 촉진을 위해 독일, 프랑스, 스웨덴, 영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의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관을 주축으로 2017년 12월 발족된 국제기구
- NGFS는 기후 및 환경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이행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발적 논의체
-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독일 등 134개 멤버, 21개 옵저버
- 우리나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가입 선언(2021.5.17)
- 한국은행은 2019년 11월에 가입

정책질의 ⑧ :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평가에 기후리스크 고려 의무

■ 금융감독 규정 개정

• 금융감독 규정에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평가에 기후리스크 고려 의무 | •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



⑧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평가에 기후리스크 고려 의무 : 각 당 답변 비교

구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찬성(●) / 반대(X) / 모호(▲)	▲	●	●	●	●
추가 의견		금융 부문의 기후리스크에 대한 회복능력과 관리 강화 목표로 다양한 방식 추가 검토 병행			
추진 시점		22대 국회 임기 내	'25~'26년	22대 국회 상반기	22대 국회 상반기
추진 방식		기후리스크 관리 및 감독 원칙 마련 등	-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 (2021.12월)에 따른 은행의 자율적 성과를 분석하여, 개선 방향 마련 - EU 등 타국과 사례 비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금융위원회/금감원의 의무 반영을 위한 조치 및 법제화 방안 모색	기후 리스크 의무 반영 법제화
반대 이유					
대안					
찬반을 명확히 표현하지 않은 답변의 경우 (의견)으로 분류	-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평가는 BIS 국제기준 등에 부합하는 국제정합성이 필수적. 현재 기후리스크를 반영한 자산 건전성평가 관련한 국제기준이 부재함. BIS 등의 국제기준 논의 동향 등을 보며 충분한 검토와 준비 필요 - 현재 금융감독당국은 '기후리스크 관리 및 감독원칙'에 따라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 개정하고 준수를 지원하고 있음				

정책질의 ⑨ 공적연기금 및 공적금융기관의 자산 포트폴리오 넷제로 선언 및 로드맵 수립과 이행

국민연금의 예

국민연금 금융배출량
(국내주식 일부)

2,710만 톤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
(2021년 6억7960만톤)

정보공개한 312개 기업만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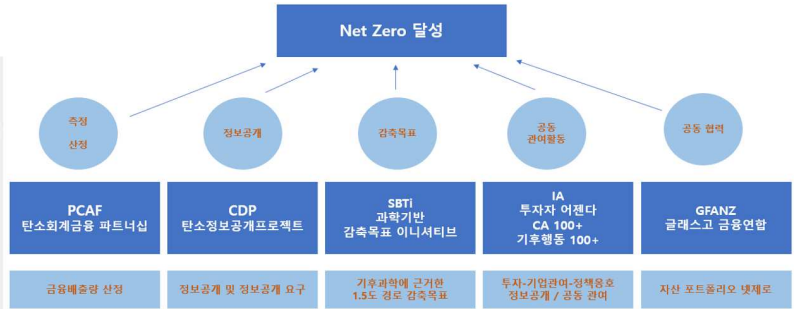
- 국내주식
- 국내채권
- 해외주식
- 해외채권
- 대체투자

국민연금이 투자한 국내 기업
금융배출량 상위 10곳 (2021년 기준)

(단위: 톤(이산화탄소 환산 기준)) 자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금융배출량: 탄소 배출 기업에 투자, 대출 등을 해줄 때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한국전력공사(에너지)	1034만7228
포스코홀딩스(소재)	727만5754
삼성전자(반도체)	123만3568
에쓰오일(에너지)	76만4876
엘지화학(소재)	60만4485
대한항공(운송)	55만9108
롯데케미칼(소재)	54만5322
쌍용씨앤이(소재)	44만9022
에스케이하이닉스(반도체)	41만1013
고려아연(소재)	34만7867



[그림] GFANZ의 금융부분별 연합 현황

구분	설립 시기	참여기관 수	운용자산	주도기관
NZAOA(넷제로 자산소유자 연합)	2019.9.	86개	9.5조 달러	UNEP FI, PRI
NZAM(넷제로 자산운용사 연합)	2020.12.	315개	64조 달러	IA
PAAO(파리 목표 동조 자산소유자 그룹)	2019.3.	56개	3.3조 달러	IIGCC
NZBA(넷제로 은행 연합)	2021.4.	138개(7개)*	74조 달러	PRB
NZIA(넷제로 보험 연합)	2021.7.	117개(17개)*	N/A	PSI
NZFSPA(넷제로 금융서비스 제공자 연합)	2021.9.	26개	N/A	PRI
NZICI(넷제로 투자컨설턴트 이니셔티브)	2021.9.	12개	N/A	PRI, 미·영 컨설팅 회사
VCA(벤처 기후 연합)	2023.4.	80개	N/A	유엔 기후변화 고위급 챔피언

⑨ 공적연기금+공적금융 자산포트폴리오 넷제로 선언·로드맵 수립·이행 : 각 당 답변 비교

구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찬성(●) / 반대(X) / 모호(▲)	X	●	●	●	●
추가 의견				• 공적연기금 재정고갈에 대한 지속적 우려. 이에 대응해 정부 재정의 공적 투입 의무화 통한 재분배 기능 강화 마련 또한 동시 진행되어야 넷제로 로드맵 수립이 녹색전환을 위한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음	• 국민연금 넷제로 기초연구에 대한 공개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 목소리 반영 • 공적연기금의 기후리스크의 사회적 공론화하고 녹색투자 필요성 부각 • 금융배출량 감축 및 넷제로 바탕으로 2030 감축목표 설정 및 근거, 금융배출집약도, 감축목표, 넷제로 시점 등을 밝힘
추진 시점		• 추진시점 미 적시	• '25~'26년	• 22대 국회 임기 내	• 22대 국회 상반기
추진 방식		• 추진방식 미 적시	• ESG 기본법 검토 • 이낙연 의원의 ESG 4법(공운법·국가재정법·국민연금법 조달사업법) 종합 • 공적연금에 녹색금융 시행현황 분석	• 관련법 개정 등을 위한 전문가, 제 정당과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22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 연구용역 통한 종합정책 및 법안 마련
반대 이유	• 인프라 및 자산역량 구축 전까지 속도조절 필요 • 서구 금융권의 탄소중립 이니셔티브 탈퇴(수익성) • 한국은 현재 경제 및 산업환경 상 해당법안 추진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음				
대안	• 자율적 방식으로 연기금의 환경영향을 관리하되, 금융배출량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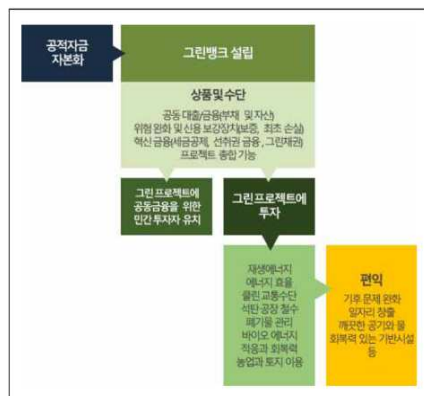
정책질의 ⑩ : ESG 금융공사 설립

■ 그린뱅크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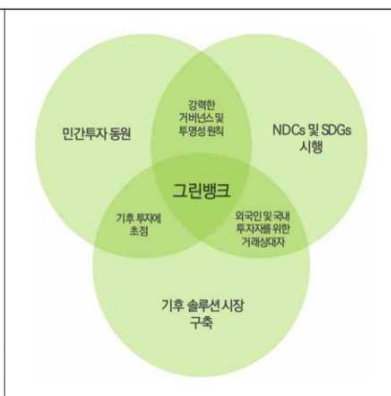
- 탄소중립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와 기술에 집중 투자
 - 기후위기 대응에만 집중할 수 없는 국가개발은행의 대안
-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시장 기반 접근법으로 재정지원의 한계와 금융 갭의 극복에 유요

민형배 의원
녹색금융공사법 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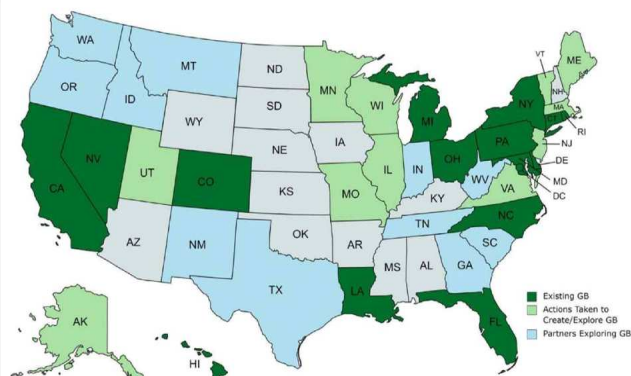
[그림] 그린뱅크와 지속가능성



[그림] 그린뱅크와 제도적 특징



[그림] 미국의 주별 그린뱅크 현황



⑩ ESG 금융공사 설립 : 각 당 답변 비교

구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찬성(●) / 반대(X) / 모호(▲)	X	●	X	X	●
추가 의견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기존에 유사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타 기관들과의 조율 선행 필요			
추진 시점		22대 국회 임기 내			22대 국회 임기 내
추진 방식		21대 국회에서 기 발의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 중심으로 추가 법안 발의 추진			- 연구용역 -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법안 마련 발의
반대 이유	-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은 ESG센터 신설 등 ESG 관련 조직 확대하고 기후대응기금 조성 운영 등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 - 그동안 확충된 정책금융 기관들의 전문인력, 노하우, 네트워크 등을 충분히 활용하고 관련 조직과 인력보강, 재원확충 등을 통한 효과적 대응 필요		정의당은 지난 대선에 산업은행을 녹색투자은행으로 전환해서 그린노믹스 추진을 공약화 함	- 취지는 공감 - 그러나 산업은행 가지는 영향력이 큰 바 별도의 금융기관 설립은 금융투자기관 간의 중복으로 인한 시장 비용 발생 우려 - 별도의 ESG 공사 존재로 산업은행의 ESG 전환 동력 약화 우려	
대안	기후대응기금을 2027년까지 두 배 확대하여 녹색채권,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녹색투자펀드 조성 등에 투자함으로써 기후산업 육성 지원		산업은행을 녹색투자은행으로 전환하여 녹색금융공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현행 산업은행의 ESG 자본조달을 위한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법률 및 관련 시행령 개정 등이 더욱 유효할 것으로 판단	

정책질의 ⑪ 스튜어드십 코드 모니터링 기구 설치

■ 스튜어드십 코드 개념

-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 발전과 고객 및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자의 자율규범
- 2010년 영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 20개국 이상이 도입. 우리나라는 2016년 말 도입

구분	내용
정식명칭	•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시기	• 2016. 12. 16일 최종안 제정 후 12.19일 공표
제정주체	• 정부(금융위원회) 최초 주도(2014.11) → 민간주도(한국ESG기준원)으로 이양(2016.8)
도입목적	•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 가치향상 및 지속가능성장 • 고객-수익자의 중장기 이익 도모 • 한국 자본시장 및 경제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
원칙내용	• 7대 원칙
의무여부	• 자율가입 • 준수방식 : Comply or Explain
지원기관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그림]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2024.3.26)



합계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PEF운용사	증권사	투자자문사	서비스기관	은행	기타
223	4	5	59	67	6	4	5	2	71

원칙	내용
원칙 1	• 수탁자 책임 정책 제정-공개
원칙 2	• 이해상충 방지 정책 제정-공개
원칙 3	•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주기적 점검
원칙 4	• 수탁자책임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
원칙 5	• 의결권 정책 제정-공개 의결권 행사 내역과 그 사유 공개
원칙 6	• 의결권 행사-수탁자책임 이행활동 고객과 수익자에 주기적 보고
원칙 7	• 수탁자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역량과 전문성 확보

[그림]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예정 기관(2024.3.26)



합계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PEF운용사	증권사	투자자문사	서비스기관	은행	기타
53	0	0	3	19	0	1	0	0	30

정책질의 ⑪ 스튜어드십 코드 모니터링 기구 설치

뉴스 > 증권금융 > 일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한다더니...가산점 받은 뒤에 '나 몰라라'

기사입력 : 2018-01-30 15:57 | 수정 : 2018-01-31 10:15

산업은행 위탁운용사 11개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현황					
PE펀드			VC펀드		
운용사	도입 시한	이행여부	운용사	도입 시한	이행여부
제이케이엘파트너스	2017년 5월	O	엘비인베스트먼트	2018년 1분기	△
네오플렉스	참여의향서 미제출		컴퍼니케이파트너스	2017년 3분기	X
이엔에프프라이빗	참여의향서 미제출		티에스인베스트먼트	2017년 3분기	X
에퀴티	참여의향서 미제출		엘지인베스트먼트	참여의향서 미제출	
와이제이케이	2017년 3분기	X	아이비케이투자증권	2018년 1분기	△
인베스트먼트			대덕벤처파트너스	참여의향서 미제출	
웨이인베스트먼트	2018년 1월	△			

스튜어드십 코드 가산점 : 산업은행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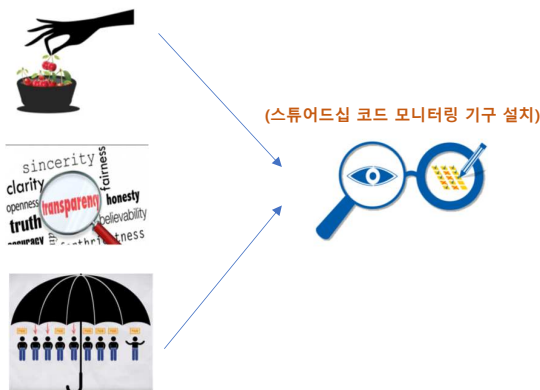
○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예정)시, 선정 평가에 반영

- 참여(예정) 운용사는 제안서 접수일 전일까지 코드 이행 등록기관(한국ESG기준원)의 스튜어드십 코드 홈페이지에 등록을 완료해야 함
- 참여 예정 운용사가 본건 위탁운용사 선정 후 미참여시, 관리보수 삭감 또는 향후 선정 평가 시 감점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그림] 국민연금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선정 가점

가. 스튜어드십코드 및 책임투자	2점	2점	
1.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1점	1점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및 등록
2. 스튜어드십코드 지침	0.5점	0.5점	스튜어드십코드 세부 운용 지침
3. 책임투자 정책 및 지침	0.5점	0.5점	책임투자 정책 수립 및 지침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 시행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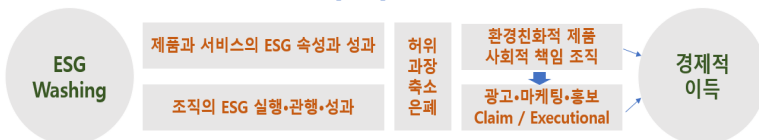


⑪ 스튜어드십 코드 모니터링 기구 설치 : 각 당 답변 비교

구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찬성(●) / 반대(X) / 모호(▲)	▲	●	●	●	●
추가 의견		어떤 형태의 모니터링 기구-조치가 가장 실효성이 높을지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 선행			
추진 시점		• 22대 국회 임기 내	• '25~'26년	• 22대 국회 상반기	• 22대 국회 상반기
추진 방식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등	- ESG 기본법 포럼 운영(1년간)을 통해서 조정 - 2018년 시작한 국민연금 현황분석해 내용 보완	전문가와 관련기관 등의 청취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기구 마련	관련 법안 마련
반대 이유					
대안					
찬반을 명확히 표현하지 않은 답변의 경우 (의견)으로 분류	-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 필요성 관련 다양한 의견 - 스튜어드십 코드 평가·점검을 통해 이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 - 반면 영국을 제외하면, 주로 민간 자율규범으로 운영 자율성 존중 의견 -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이행점검 여부는 시간을 가지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판단 필요				

정책질의 ⑫ : ESG 워싱 방지 모니터링 기구 설치

[그림] ESG 워싱 정의



[그림] 국민연금 ESG 워싱

국민연금공단, 위탁운용 책임투자 자산 98% 'ESG 워싱' 주장 제기돼

지난해 위탁운용서 책임투자 포함된 항목에 의혹 제기
실제로 ESG 고려해 운용하는지 확인해야

"284조 중 278조...기준 자의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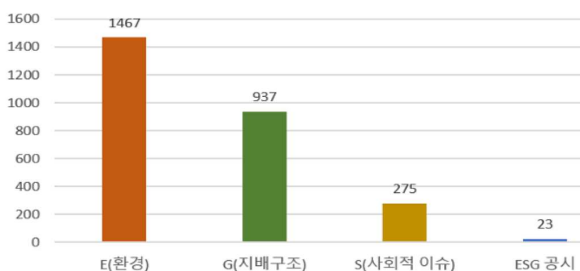
[표] 국민연금 자산군별 연도별 책임투자 규모 추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국내주식				
직접운용	26.98 (71.6)	93.37 (93.4)	84.3 (84.3)	62.0 (62.0)
위탁운용	5.19 (60.7)	8.0 (83.3)	7.7 (81.5)	63.4 (63.4)
국내채권				
직접운용			38.2 (292.9)	37.7 (265.5)
위탁운용			0 (47.1)	45.6 (45.6)
해외주식				
직접운용				0 (98.3)
위탁운용				142.6 (142.6)
해외채권				
직접운용				0 (30.5)
위탁운용				32.8(32.8)
대체				
부동산				0 (46.4)
인프라				0 (38.5)
사모				0 (59.8)
책임투자 총 규모	32.17	101.37	130.2	384.1
총 기금운용 규모	736.7	833.7	948.7	890.5
책임투자 총 비율	4.36%	12.15%	13.72%	43.13%

※ ()안 수치는 각 자산별 총 운용규모, 적색 수치는 책임투자 규모

※ 출처 :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공시자료를 토대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작성

[그림] 미국 ESG 소송 현황



출처 : 블룸버그 로(LAW)

정책질의 ⑫ : ESG 워싱 방지 모니터링 기구 설치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신뢰저하
V 기업에 대한 신뢰하락



시장질서와 ESG 생태계 전반 교란
V 환경-사회-경제적 손실 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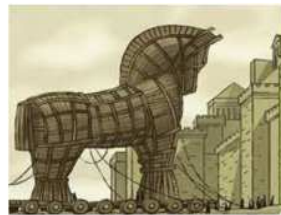


녹색제품 개발의지와 투자저하
V 친환경·사회적 책임 제품 기술혁신 방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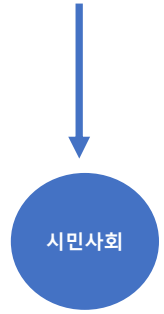


환경·사회적 문제 더 심화
V 그린워싱 상품구매로 오히려 환경을 해침

환경문제 가중
사회문제 가중



ESG 워싱
전문 모니터링 기구 설치



⑫ ESG 워싱 방지 모니터링 기구 설치 : 각 당 답변 비교

구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찬성(●) / 반대(X) / 모호(▲)	X	●	●	●	●
추가 의견		필요시 ESG 기본법 제정 등 추가적 방안 검토			EU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린워싱 방지법과 연동해 모니터링 기구 설치
추진 시점		22대 국회 임기 내	'25~ '26년	22대 국회 상반기	22대 국회 상반기
추진 방식		관련법(공정위 표시광고법, 환경부 환경기술산업법) 등 개정	ESG 기본법 포럼 운영(1년간) 통해 조정	전문가와 관련기관 등의 청취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규제기구 마련	연구용역을 통한 종합정책 및 법안 마련
반대 이유	- 현재 공정위, 환경부, 소비자원 등에서 그린워싱과 관련한 규제지침을 만들고 시행 중. 추가적인 ESG 워싱 방지 모니터링 기구를 설치할 경우, 시장에 너무 많은 규제기관이 등장으로 소비자 및 기업의 불편을 일으킬 수 있고 정책실효성 약화 - 허위공시 및 그린워싱 여부에 대한 판단에 논란의 여지. 개별 법률적 판단을 받을 사항이지 획일화된 기준하에 관리하는건 부적절 - 녹색활동을 오히려 위축시킬 위험 존재				
대안	3개 기관에서 각각 시행 중인 그린워싱 관련 규제 기능을 통합해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음. 규제보다는 가이드라인 형태가 바람직				

정책질의 ⑬ : 기업재생에너지 수요 반영한 전력망 탈탄소화 목표수립 및 재생에너지 공급확대에 대한 입장

- 국가 차원의 전력망 탈탄소화 목표 수립 필요성
- 증가하는 기업 재생에너지 포함한 탈탄소 에너지 수요 반영하여 국가목표 상향
- 이행계획에 민간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를 통한 공급물량 반영 및 지원정책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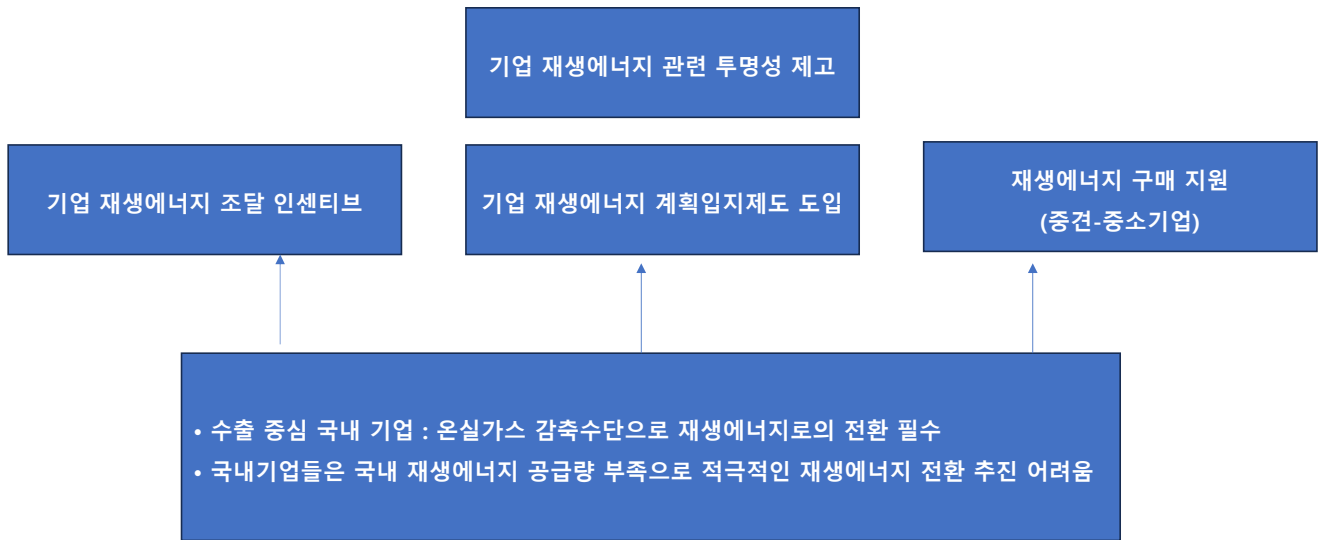
기업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

구매 가능한 수준의
재생에너지 공급 프로젝트 부족 현상 지속

⑬ 기업재생에너지 수요반영 전력망 탈탄소화 목표수립 : 각 당 답변 비교

구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찬성(●) / 반대(X) / 모호(▲)	X	●	●	●	X
추가 의견					
추진 시점		• 22대 국회 원구성 이후	• '25 ~ '27년	• 22대 국회 임기 내	
추진 방식		• 관련법 개정	• 탄소중립위원회 객관성 확보, 시민사회 등과 연대 통해 사회적 여론 형성 -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차 확대 공약	• 국가 NDC 상향 및 재생에너지 및 녹색전환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 필요 • 2035년 이내 재생에너지 60% 전환 위한 대규모 국가투자 진행. 전환수의 일부를 전 국민에게 녹색배당으로 지급. 국가재정투자 및 기후채권 발행 등을 통해 전환자본 마련	
반대 이유	• 재생에너지만을 활용한 전력분야 탈탄소화에는 한계 존재. 현재 국내에서 공급되는 재생에너지 물량은 기업수요 대비 충분한 상황. 다만 국내 여건상 재생에너지 구매비용이 해외 대비 높아 재생에너지 비용을 낮추어 가는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재생에너지 거래편의 위해 녹색프리미엄, PPA 등 제도 개선 필요				• 전력 PPA 확대는 전력 민영화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지점으로 진보당은 이를 당론으로 반대함
대안	• 전력분야 탈탄소화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전, 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 활용하는 CFE 필요				• 국가차원에서 전력망 탈탄소화 목표수립하되, 기업차원에서 건설계획 및 인허가과정에서 재생에너지 확보방안 역시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정책질의 ⑭ : 기업재생에너지 구매 환경 개선 정책에 대한 입장



⑭ 기업재생에너지 구매환경 개선정책에 대한 입장 : 각 당 답변 비교

구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찬성(●) / 반대(X) / 모호(▲)	● (구체적 사안에는 찬반 표시 안함)	●	●	● ① (한시적찬성)	X ●
구체적 사안	1. 조달인센티브 강화 2. 계획입지제도 도입 3. 중소-중견기업 구매지원 4. 정보 투명성 제고	1. 조달인센티브 강화(●) 2. 계획입지제도 도입(●) 3. 중소중견기업 구매지원(●) 4. 정보 투명성 제고(●)	1. 조달인센티브 강화(●) 2. 계획입지제도 도입(●) 3. 중소중견기업 구매지원(●) 4. 정보 투명성 제고(●)	1. 조달인센티브 강화(●) 2. 계획입지제도 도입(●) 3. 중소중견기업 구매지원(●) 4. 정보 투명성 제고(●)	1. 조달인센티브 강화(X) 2. 계획입지제도 도입(X) 3. 중소기업 구매지원(●) 4. 정보 투명성 제고(●)
추가 의견	• 조달 인센티브 부여해 직접 PPA 확대하도록 장려 • 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이에 선행하여 분산전력망을 확보하고, 지자체 경제적 편익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등 정책 패키지가 종합적으로 필요 • 제조업기반 우리나라 산업 구조 감안해 무탄소경제로 진입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 국내외 기업 등과 협력 필요			• 현행 재생에너지 가격이 높은 것은 낮은 재생에너지 전환율에 기인. 전환 과정 속에서 재생에너지 선택률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한시적 지원은 가능하나, 재생에너지 전환 비중이 높아지면 기업에 구매 편익을 제공하는 대신 일반 재생에너지 효율과 분산전력망의 안전성 강화가 보다 효용이 높을 것으로 봄	• 전력 PPA확대는 전력 민영화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지점으로 진보당은 당론으로 반대함
추진 시점	• 22대 국회	• 22대 국회 원구성	• '25 ~ '27년	• 22대 국회 임기내	• 22대 국회 상반기
추진 방식	• 공약에 반영되어 있고 정부 차원에서 계획 중인 부분도 존재	• 관련법 개정	• 탄소중립위원회 객관성 확보, 시민사회와의 연대 통해 사회적 여론 형성 • 녹색정의당은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자 확대 등을 공약화 함	• 제 전문가와 환경단체, 기업 등의 의견청취 바탕으로 법제화 진행	• 22대 국회개원 이후 당내 기후특위 및 정책연구원이 합동으로 정책 방향 및 추진계획 수립
반대 이유					
대안					

토론

좌장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

패널

권승문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박항주

녹색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기후위기 대응센터장

박태우

진보당 정책국장

Memo

--	--

Memo

--	--	--

Memo

--	--	--



Korea Sustainability Investing Forum(KoSIF)

웹사이트 www.kosif.org

대표전화 02-738-1142 팩스 02-738-1143

주소 (06088)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 (학동로 402) 천마빌딩 707호

본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이에 대한 무단복제 및 배포를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단 복제·배포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 137조, 138조에 의한

권리의 침해 죄, 부정발행 등의 죄, 출처명시 위반의 죄 등에 해당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